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북한이탈주민의 영어(營漁) · 영림(營林) 정착지원 >

■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836)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건의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 2024. 11. 25.
3. 회 부 일 : 2024.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營農) 정착지원 외에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려는 내용임(안 제1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농업 현장 실습 3. 4. (생략) ② (생략)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현행과 같음) 2. 농업·어업·임업-----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정착지원시

설에서 보호(법 제11조), 사회적응교육(법 제15조),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법 제16조 및 제17조), 주거지원(법 제20조), 정착지원금 지급(법 제21조), 교육지원(법 제24조) 등의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자립을 촉진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제16조),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위해 3년간 취업보호 기간을 설정하고(제17조),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을 제공(제17조의6)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우선 구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7조의4, 제17조의5).

또한, 법 제17조의3¹⁾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 교육 훈련, 농업 현장 실습, 영농 자금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영농 정착지원에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어업 및 임업 종사를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직업

1)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 교육 훈련
2. 농업 현장 실습
3. 영농 자금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 적응할 기회도 또한 제공하게 되며,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영농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운영비 지원에서 일부 어업과 임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는 영농을 중심으로 정착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영농정착지원사업 〉

사업목적	사업내용
영농희망자 육성	○ 영농희망자 교육 - 교육목적 :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계적인 영농교육을 통해 귀농시 성공율을 높이고 본인 적성에 맞는 작목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대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누구나(연령제한 없음) - 교육시기 : 하반기 예정 ○ 영농정착성공패키지(영성패) - 지원대상 : 만 19세~70세 미만 북한이탈주민 영농희망자 ※ 재단 실시 영농교육 참여자, 농림부·농촌진흥청·지자체 등 영농 관련 교육 이수자 우대 - 교육목적 : 영농정착 단계별 지원 및 실습을 통한 영농성공률 향상 - 지원자격 : 영농을 희망하는 만 19~70세 미만 북한이탈주민 - 교육내용 : 교육 2~3주, 실습 3~5개월 ① 1 단계 : 영농교육(2~3주) • 합숙교육을 통한 이론 및 귀농사례교육, 현장실습 ② 2 단계 영농실습 : 3~5개월 • 작목 심화교육, 농기계교육, 판로확보 등 * 실습자, 실습농가에 대해 실습비용 지급 ③ 3 단계 : 영농창업 • 초기 운영자금 지원(심사를 통해 선정)

	* 기존 재단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 ④ 4 단계 사후관리 • 농촌진흥청 작목 컨설팅, 재단 영농컨설팅 지원, 판로확보 지원 - 모집시기 : 상반기 1회(2~3월), 하반기 1회(6~7월) - 모집인원 : 1회 기준 15명 내외
영농경쟁력 제고	○ 영농운영비 지원 - 지원목적 : 운영비 지원을 통한 영농초기 어려움 일부 해소 - 지원자격 :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탈북민 ① 본인 명의 농지대장 발급 완료 또는 농(어·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중 공고일 기준 만20~70세 미만이며, 등록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탈북민이 공동경영주로 등재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도 인정) ② 가축사육을 하는 자는 가축사육업등록증 또는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지자체), 신고확인증(곤충 등 기타 작목)을 필한 자로 공고일 기준 만 20~70세 미만이며, 등록 및 허가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③ 어업신고 증명서(지자체)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양수산부) 또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 공고일 기준 만 20~70세 미만이며, 등록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임업인 인정범위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인정할 예정임(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모든 자격은 발급일자, 임대차 계약일자 기준. 또한 본인명의 농지대장 미발행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영농실습기간(재단, 지자체)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영농정착 기반조성	○ 영농종사자 워크숍 - 지원목적 : 영농에 종사중인 북한이탈주민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소통확대 - 지원대상 :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북한이탈주민 - 교육시기 : 하반기 예정 ○ 영농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재단의 영농컨설팅트,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영농희망자, 영농종사자 등 컨설팅 필요한 영농종사 북한이탈주민

자료: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예산액 >

세부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9월
영농교육(영성패 등)	43백만원	26백만원	57백만원	47백만원	32백만원
영농 운영비 지원	27백만원	28백만원	35백만원	45백만원	39백만원

자료: 통일부

- 개정안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어 및 영림 정착지원을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어업 및 임업을 희망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²⁾

어업과 임업은 농업과는 다른 기술과 기반 시설이 요구되는바, 어업의 경우 연안 접근성, 어업권 문제, 장비 지원 등의 문제, 임업의 경우 장기간의 투자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어업과 임업에 특화된 정착지원 방안 마련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어 및 영림 지원이 제한되었던 이유는 과거 배를 이용하거나 산악지형을 이용한 월북 우려 등이 고려되었던 측면도 있는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지역 및 대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하여 영농 뿐 아니라 영어·영림 분야도 지원해야 하는 데 동의하며, 현재 남북하나재단에서 영농, 영어, 영림 지원을 모두 실시하고 있고, 3년이상 창업 생존률에 비해 영농 정착률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정책방향이라는 입장이며,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67

2) 2024년도 남북하나재단 영농재정지원 및 영농교육실시 현황

* 영농재정지원 39명, 영농교육 116명(영농정착성공패키지 33명, 지자체 83명(예산, 익산, 홍천, 부여))